

수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귀하
참조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발신 사드철회 평화회의 (담당 :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통사 오혜란 02-711-7292 /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교무 010-6732-4438 windrest4438@gmail.com)
제목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질의와 국가안보실 면담 요청의 건
날짜 2020. 03. 13. (총 17 쪽)

[질의 및 면담요청서]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질의와 국가안보실 면담 요청의 건

1. 평화·번영·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주한미군이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레이더나 발사대의 이동 배치,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사드 부지 공여 요구로 이어지고, 한국 MD의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며, 한미일 삼각 MD 구축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3. 이에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략시키고 한미일 MD 구축은 대중 ‘3불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중국과의 외교, 경제 보복을 자초하는 최악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입니다. 또한 한미 국방부 간 소위 ‘약정’을 통한 한국의 사드 부지 공사비용 부담도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며

대국민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5. 아울러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임시배치 상태이며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자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6. 우리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외에 천명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로의 전용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기지 공사의 중단과 사드 철거를 촉구하며 불임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7. 우리의 질의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장 또는 1차장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실무 책임자의 배석도 요청드립니다.

- 면담 일시 : 2020년 3월 중(협의해서 조절 가능)
- 면담 장소 : 청와대
- 면담 참가자 : 사드철회평화회의 대표 외 약간

*붙임 : 의견과 질의 15쪽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의 이동·추가 배치는 위헌·위법!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용으로의 전용은 불법!

1. 소성리 사드의 이동 배치와 사드 추가 배치는 위헌·위법

1) 소성리 사드 발사대의 북쪽으로의 전진 배치 또는 레이더의 남쪽으로의 후진 배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부지 공여는 위헌·위법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JEON) 1단계는 사드의 원격 발사 실현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를 소성리 남쪽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를 소성리 북쪽으로 이동 배치하려고 하고 있음.
- 사드 원격 발사를 위한 소성리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의 전·후진 배치는 미 미사일방어청(MDA) 힐 청장의 2021년 미 국방예산 설명 브리핑(2020.2.10)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그는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줄 수 있다”며 “(소성리)사드 포대를 더 뒤로(남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레이더를 뒤로 이동시킬 수도 있으며, 발사대를 앞으로(북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미 미사일방어청은 이미 사드 원격 발사 및 요격 시험평가를 2019년 8월에 진행한 바 있음(미 국방부 운영시험평가실(DOT&E), 2019 연간보고서).
- 나아가 주한미군과 미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 2단계(사드 레이더로 PAC-III MSE 원거리 발사)와 합동긴급작전요구 3단계(사드와 PAC-III 체계 통합)를 실행 도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를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이렇듯 주한미군과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합동긴급작전요구는 단지 계획이거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과제임.

- 따라서 주한미군의 합동긴급작전요구가 이행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새로운 사드 부지를 요구할 것이 예상됨.
-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자체가 한미 양국의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배치이며, 부지 공여 또한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외교부 국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것으로, 사드 레이더 또는 발사대의 이동 배치에 따른 추가 부지 공여 역시 위헌·위법적인 것임.

【 질문 1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 이동 배치를 허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 이동 배치에 따른 추가 부지를 공여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사드 포대 또는 발사대나 레이더의 추가 배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부지 공여는 위헌·위법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JEON) 1단계는 또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예정하고 있음.
- 미 미사일방어청(MDA) 힐 청장은 2021년 미 국방예산 설명 브리핑(2020.2.10.)에서 한국에 사드 발사대의 추가 도입("you can bring in additional launchers")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이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임.
- 또한 이는 이미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음. 미국은 대한민국에 당초 사드 2개 포대를 배치하려고 했다는 보도(채널 A, 2016.2.1.)나, 2017년에 주한미군이 사드 2개 포대 인력을 운용한 바 있다는 보도(중앙일보, 2018.3.26.) 등.

- 한국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힐 청장 발언은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시사했다기보다는 집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 역시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라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 육군은 텍사스 포트 블리스와 포트 후드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포대 중 하나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주한미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북쪽이나 남쪽에 사드 포대 또는 발사대나 레이더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 2016년에 사드 부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평택, 칠곡, 음성, 군산, 부산 기장, 광양,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음.
- 이는 추가로 도입될 사드 포대 또는 발사대나 레이더 배치를 위한 주한미군의 새로운 부지 공여 요구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미국이 대한민국에 추가로 사드 포대 또는 레이더나 발사대를 배치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며, 이를 위한 추가 부지 공여도 위헌·위법임.

【 질문 3 】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또는 레이더나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허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 】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또는 레이더나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위한 추가 부지를 공여해줄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른 사드와 PAC-III 통합은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과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가속, 전면화함.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는 2단계에서 PAC-III MSE가 사드 레이더의 표적정보를 지원받아 원거리 발사(LOR)를 구현하는 것임.
- 또한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는 3단계에서 PAC-III MSE와 사드 포대와의 통합을 구현하는 것임. 이는 PAC-III MSE 미사일과 발사대를 사드 체계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킴으로써 달성됨(GAO 보고서, 2019.6).

- 한편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합동긴급작전요구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합동긴급작전요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상층방어체계(사드, 이지스 BMD)와 하층방어체계(PAC-III MSE) 간 체계 통합을 구현하는 것임(미 미사일방어청 2018 회계 연도 예산 설명 자료). 곧 주한미군의 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 체계가 아니라 미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위 체계라는 의미임.
- 따라서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 2, 3단계 구현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군 MD와 주한미군 MD와의 통합 과정을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며, 한국군 MD가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부체계, 곧 미국 MD 체계로 보다 깊숙이 전면적으로 편입되어 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 MD의 주한미군 MD와의 통합과 미국 MD 편입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음. 한미 양국이 연동 합의각서를 체결(2016.1)해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를 연동시키기로 합의하고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 간 연동으로 완료(연합, 2017.5.17)한 것이 가장 뚜렷한 양국군 MD 통합의 징표임.
- 한국군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을 위해 한국군은 항공우주작전센터(KAOC)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전술데이터링크를 Link-16으로 성능 개량해 이를 2025년까지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PAC-III, 이지스함 등에 구축할 예정임.
- 한편 유사시 한미 간 '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CAMDOCC) 운영 절차에 관한 합의서'(2012.4.12 체결, 2013.11.8 개정)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센터(KAOC) 내 한미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한미 통합 MD를 전술 지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담보함. 작전적 차원에서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선명하게 보여 줌.

- 2012년 10월 28일, 한국 국방부는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편입)의 기준으로 미국의 사드 X-밴드 레이더 배치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음. 당시 미 국방부 캐슬린 히스 정책 담당 수석 차관보도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 기준으로 사드 레이더의 배치를 제시하였음. 성주 소성리에 미국의 사드 포대(레이더)가 배치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조건은 충족된 셈.
- 이에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과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은 사실상 공식 선언만 남겨 놓고 있음. 김대중 정부가 한국 MD 구축 불가능과 미국 MD 편입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한 이래로 역대 모든 정권이 한국 MD의 구축에는 나섰지만 미국 MD 편입의 선만은 넘지 않았으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국방부와 군이 야금야금 추진해 온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 편입을 공식 천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
- 한국 MD의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 편입은 필히 한국군 PAC-III MSE 추가 도입과 한국군 SM-3 Block-I/II 이지스 요격미사일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군 PAC-III MSE와 이지스 요격체계의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와의 통합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한국군 보유의 사드 체계 도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국 MD의 주한미군 MD와의 통합과 미국 MD 편입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것임.
- 한국 MD의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 편입 및 미군 주도의 통합 MD 작전 수행은 한국 MD 자산과 주한미군 MD 자산의 방어 우선순위(DAL, 방어자산목록)에 대한 한미 간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들 간에도 MD 방어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음. 특히 나토와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 MD 자산의 일부가, 일본 MD 자산의 일부가 인도-태평양 미군과 미국 방어에 동원되는 것처럼,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미군, 나아가 미국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질문 5 】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과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현 수준에서 중단하고 이를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전면 통합과 편입으로 나아가고 이를 공식 천명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6 】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밝힌 한국군 사드 체계 도입과 SM-3 요격미사일 도입 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7 】 노무현 정부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할 당시 공군 작전통제권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에 공군과 MD 작전통제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은 미국 주도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으로 이어지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됨.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와 인도·태평양 합동긴급작전요구 실행으로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통합과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이 가속화, 전면화 되면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이 보다 현실화되고 고도화됨.
- 일본 MD는 한국 MD보다 앞서 주일미군 MD와 전면 통합되고 미국 MD에 편입되어 있음. 미일 양국은 요코다 공군기지에 미일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C)를 구축해 일본 MD와 주일미군 MD를 통합 운용하고 있음.
- 일본 MD와 주일미군 MD 통합 체계는 미국 DSP 체계와 일본 자동경계관제체계(JADGE)를 연동한 정보체계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주일 미 해군 이지스함을 주력으로 하는 요격체계로 구성됨.
- 주한미군 TMO-Cell과 주일미군 TMO-Cell은 서로 연동되어 있으며, 각각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북부사령부 및 전략사령부와 연동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

과 주한미군의 통합 TMO-Cell(오산 공군기지)과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통합 TMO-Cell(요코다 공군기지)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센터(ASOC, 하와이 히카姆 공군기지)의 C2BMC와 연동되어 사실상 한 체계와 다를 바 없이 운용되고 있음. 즉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센터를 매개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한미일 통합 MD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또한 유사시 요코다 기지의 미일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C) 내 미일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CAMDCCC)로 미 육군 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미일 통합 MD를 전술 지휘함으로써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담보함. 유사시 미 육군 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 전방지휘소를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미일 3각 동북아 MD를 통합 작전지휘하게 되는 것임.
- 이에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합동긴급작전요구가 구현되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직접 연동되는 것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PAC-III, 사드, 이지스 BMD 체계 간 직접 연동(P2P)이 실현됨. 이는 한미, 미일 MD 통합과 한미일 3각 동북아 MD 통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게 됨.
- 2019년 8월, 미 미사일방어청은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의 표적정보를 이용(추정)해 마셜군도 콰잘란에 배치된 발사대로 요격하는 실험을 이미 진행한 바 있음(2019 미 국방부 DOT&E 연간 보고서).
- 한편 미국이 2023년까지 개발할 사드 소프트웨어 5.0은 “확장된 지역 방어를 목표로 하며, 교전자가 종말모드의 사드 레이더를 사용하여 BMD 체계에 극초음속 위협을 추적, 보고할 수 있음(미 미사일방어청 2020 예산 설명 자료). 이는 사드 레이더를 축으로 한 한미일 3각 MD의 성격과 임무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중국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 사례임.
- 또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는 수시로 한미일 이지스함 간 연합탐지·추적과 정보 공유훈련이 인도·태평양 공군사령부의 C2BMC와의 연동 하에서 실시되고 있음.

한미일 MD 체계의 통합을 넘어 이를 유사시 한미일 통합 MD 요격작전을 구현하기 위해 평시 한미일 통합 MD 탐지·추적·정보공유훈련이 진행되는 것임.

- 평시 한미일 통합 MD 탐지·추적·정보공유훈련을 요격훈련으로 발전시키고 유사시 한미일 통합 MD 요격작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 이지스함의 SM-3 요격미사일 장착과 요격작전에 대한 미일의 요구는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한국군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음.
-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적 연동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음(국방부 정례브리핑, 2017.3.14.). 이는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통합이 모색될 가능성을 시사해 줌.
- 한편 “한미일 통합 BMD 체계는 보다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동맹)의 견인차”(미 CRS(의회보고서), 2015.4)임. 한미일 MD가 구축되고 이의 수행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GSOMIA) 체결에 이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한일 ACSA)까지 체결되면 한일 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 구축 단계로 발전하게 됨.

【 질문 8 】 현재 한국 MD는 미국 MD를 매개로 사실상 일본 MD와 연동되어 한미일 M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역대 한국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한일군사동맹 구축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와의 연동을 단절하고 한미일 MD 체계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는 남한을 대중 전초기지로 전략시키고 한미일 MD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3불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중국의 외교, 경제보복을 자초하며 핵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정책임.

-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와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은 미국에 중국의 ICBM에 대한 탐지·추적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로의 요격에 나서게 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미국 방어를 위한 첨병으로 전략시키게 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당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그 대상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동북아에서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진영 간 대결이 초래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됨.
-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와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전면 뒤집는 것으로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 게다가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미중 유사시 대중 공격에, 특히 MD 공격작전(선제공격)에 사용한다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되는 등 한국의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것임.
- 이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이행과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의 실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언제라도 핵참화의 대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음.

【질문 9】 이른바 대중 3불 정책을 준수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해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 비용으로의 전용은 불법

1) 사드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사실 확인

-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성한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는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 부지)의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설계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이는 사드 부지 건설 사업 계획이 이미 2018년 이전에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함.
- 2021년에는 소성리 사드 부지의 탄약고 3개동과 관련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집행(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하기로 함. 이는 사드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2)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통한 사드 부지 건설 공사 강행은 한미소파 위반

- 한미소파 5조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신 미합중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는 SOFA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라면서 “방위비분담금에서 사드를 위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고든지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2016. 7. 11, 국회 회의록)라고 밝힌바 있음. 강경화 외교장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2020. 2. 18)이라고 확인함.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설계 및 건설 공사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반이자 우리 정부 입장에 배치됨.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 공사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한미소파와 우리 정부 입장에 부합함.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사드 부지 건설비용 부담과 전용 근거 없어

-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부지 설계비 및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
-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을 보더라도 사드 부지 건설비(설계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항목은 한미가 사전에 건설사업 목록을 협의하고 집행과정에서도 한국 국방부가 관여하게 되어 있음. 설령 긴급 소요항목이라고 해도 집행년도 8월 31일까지 제기되어야 함. 그런데 사드 배치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18년 군사건설항목의 긴급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2018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의 사드 부지 설계비 사용과 관련해 국방부는 “설계 감리비 명목의 현금은 미측의 판단하에 사용되었”(국방부 브리핑, 2020.2.20)다고 해명함. 그런데 주한미군이 소성리 사드 부지 설계비로 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은 그동안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현금으로, 미국이 우리 국고로 회수해야 마땅한 돈을 사드 부지 설계비로 사용한 것 자체가 우리의 재정 주권을 침해한 불법임.
-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 건설비를 사용할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도 되지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음. 설사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사드 부지 건설 공사 부담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 자체가 한미소파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불법임.

4) 기관 간 ‘약정’을 앞세워 사드 부지 기반공사비용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그 자체로 위헌·불법이며, 대국민 신의 배반

- 국방부 일각이나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3.4)을 근거로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전개와 운용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함.
-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음. 이에 이 ‘약정’의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우리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위헌, 위법임. 이 ‘약정’은 조약 서명권자(대통령이나 외교장관 또는 이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한 것이 아니며,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약정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 위법임.
- 소성리 사드 부지 내 기반시설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은 한국 육군본부가 펴낸 『행정협정 해설서』(1988년)가 재확인해주고 있음. 이 해설서에 따르면 “한미소파 제2조에서 ‘미국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할 때의 ‘시설’이란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이)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거나 독립된 시설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5쪽)고 밝히고 있음. 즉 기반시설이든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이든 소성리 사드부지 내 건설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하고 한국이 이를 부담할 의무도 책임도 전혀 없다는 것임.
- 이에 한국이 2018년도 사드 부지 공사 설계비를 부담한 것과 2021년도 사드 부지 건설 사업으로 탄약고 3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전기·보안 시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미 SOFA 위반임.

- 접수국(한국)이 아닌 주둔국(미국)이 기반시설을 포함해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국제법적 원칙이기도 함. 미-루마니아 MD 협정(2011년)이나 미-폴란드 MD 협정(2008년)을 보더라도 미국이 기지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선 설치 등)비용을 부담하며 운영비(수송, 건설, 유지 및 보수, 운용)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심지어 기지 밖의 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 건설과 변경에 드는 비용조차 미국이 그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반해 한국은 사드 기지 밖 기반시설 비용과 기지 안 기반시설 비용, 군수 시설 건설비, 경비 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굴욕적인 상황임.
- 정부가 그동안 줄곧 사드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놓고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대국민 약속위반임. 뿐만 아니라 2018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미당국이 2021년도에 사드 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협의하고도 국방부가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2020. 2. 14, 국방부 대변인)며 발뺌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임.

【 질문 11 】 2018년부터 사드 부지 건설비용으로 전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의 총액과 항목, 매년 집행 규모와 내역을 밝혀주시시오.

【 질문 12 】 문재인 정부는 사드 관련 약정에 관한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 약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3 】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에 불법적으로 전용된 경위와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4 】 2021년 사드 부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계획 철회를 포함하여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드 부지 공여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건설공사 강행은 위법 :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불법 둔갑시켜**

-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임시(가)배치 상태에 불과함. 이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함.
- 그러나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부지 공여는 중단 상태에 있으며, 한미당국이 소성리 사드 부지 공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미 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 건의문’(Agreed Recommendation, 2017.4) 뿐임.
- 그러나 ‘합의 건의문’은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쳤을 뿐, 조약으로서의 국내법적 절차—정부 대표 서명,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님.
- 따라서 ‘합의 건의문’에 근거한 1차 사드 부지 공여(32.8만㎡)는 법적 근거가 없음.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드 부지 공여(1차 부지 공여 면적 포함 총 70만㎡)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
- 또한 부지 쪼개기 공여라는 국방부의 꼼수로 소성리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음. 심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환경부의 ‘각종 환경기준 국내법 우선 적용’(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병욱 환경부 차관, 2017.9.4.) 등의 조건부 승인 조치를 주한미군이 수용하지 않아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함.
-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자 전횡임. 임시배치 상태에서 정부가 불법적인 건설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꼴.

- 부지 공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설계나 공사 등이 변경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해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자 사실상의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대국민 신의를 저버리는 것임.
- 이에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건설 공사비로 전용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탄약고 건설사업 계획도 철회해야 함. 나아가 사드의 이동, 추가 배치 계획 철회와 불법으로 도입한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함.

【 질문 15 】 사드 부지에 대한 정식 공여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었으며, 일반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전면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